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1월 22일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3년 11월 6일

나. 제출자: 강서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3년 11월 10일

라. 상정일자: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 상정·의결(2023.11.22.)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제안이유

2024년 말에 준공되는 마곡 마이스(MICE) 단지는 외래 관광객 유치에
위한 핵심 산업으로, 우리 구의 마이스산업 육성을 통한 관광산업
촉진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마이스(MICE)산업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1조, 제2조)
- 나.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마이스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하여 추진해야 하는 사업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5조, 제6조)
- 라. 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관, 단체, 대학 등과 업무협약 등 협력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6조)
- 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바. 마이스정책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사.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등 운영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2) 「전시산업발전법」
- 3)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3. 7. 19. ~ 2023. 8. 8.) 결과: 의견없음
- 2)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3) 규제사전심사 결과: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 미반영

4.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장석현)

가. 제정 취지

- 본 조례안은 마곡동 767 일대에 조성되는 「마이스(MICE) 복합 단지¹⁾」를 외래 관광객 유치에 위한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고 우리구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임

1) 마곡 마이스(MICE) 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건설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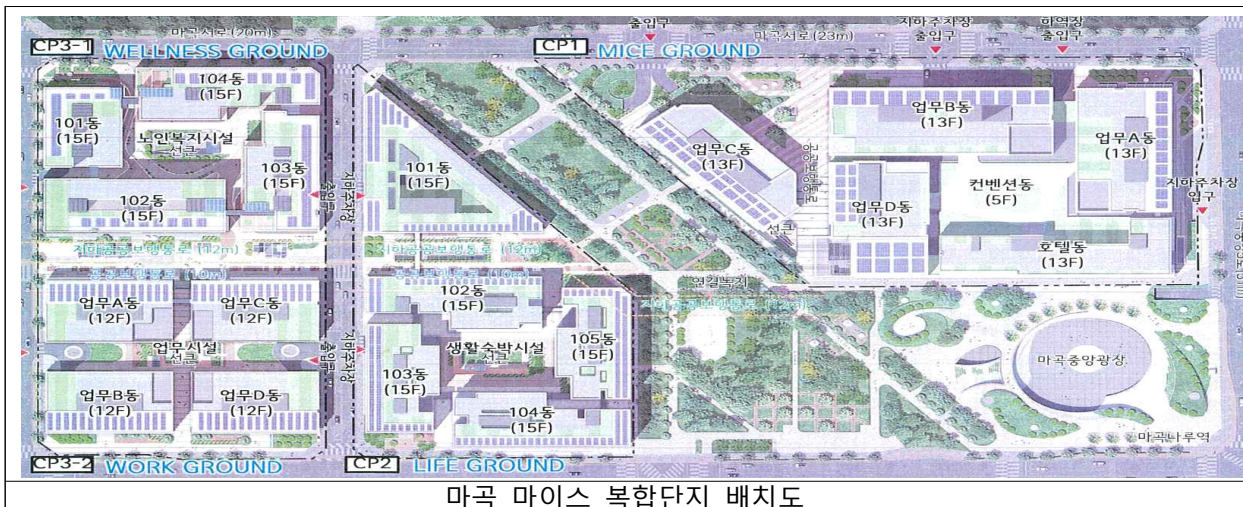
가. 위 치: 마곡동 767 일대

나. 규 모: CP1 ~ CP3(총 연면적 792,931㎡ / 지하7층 ~ 지상15층)

구 분	CP1	CP2	CP3
사용용도	컨벤션, 호텔 등 문화시설 ※ 마이스(MICE) 산업	생활숙박시설(876실) 등	어르신복지시설(CP3-1) 업무시설(CP3-2)
조성시기	'24년 11월	'24년 11월	'24년 11월 ~ 25년 하반기

※ 마곡 마이스(MICE) 산업 규모 : CP1

- 컨벤션: 전시장 1실(2분할), 회의실 39개실, 컨벤션홀 1실 등 연면적 59,672㎡(지하7층 ~ 지상5층)
- 호텔: 머큐어(mercure) 4성급 400객실 및 수영장 등 부대시설 연면적 32,956㎡(지상7층 ~ 13층)



나. 주요 내용

- 안 제1조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산업 촉진, 도시 브랜드 제고 등 역사·관광·문화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규정함
- 안 제2조는 ‘마이스(MICE)산업’이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 및 국제 이벤트(Event)를 아우르는 새로운 융합산업으로 용어를 정의함
- 안 제3조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이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하는 책무를 명시함
- 안 제5조는 구청장은 관내 마이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계획 수립의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제5조(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구청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

1. 마이스산업의 발전 방향과 목표
2. 마이스산업의 국내·외 여건 및 전망
3. 마이스산업의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4. 지역산업 및 역사·문화·관광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방안
5.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6.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안 제6조는 구청장은 마이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외 홍보 및 지역 관광과 연계한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대학 등 단체와의 제휴를 통한 공동 업무추진 및 전문기관에 사업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여 효율성을 도모함
- 안 제7조는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으며, 지역 주민과 관련 업체의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안 제9조 ~ 13조는 마이스산업의 제도개선 및 주요 현안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기 위한 「마이스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위원장 직무 등 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하여 규정함

다.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2024년 말에 준공되는 「마곡 마이스(MICE) 복합 단지」를 외래 관광객 유치에 위한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고 우리구 관광산업 촉진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이번 제정을 통해 마이스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의 성공적 도약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제정으로 판단되며,

- 관내 마이스(MICE) 산업 활성화를 통하여 도시 브랜드 제고, 일자리 창출 등 우리구 지역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심사결과: 원안가결

※ 붙임 관계 법령 1부.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회의”란 상당수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회의(세미나·토론회·전시회·기업회의 등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국제회의산업”이란 국제회의의 유치와 개최에 필요한 국제회의시설, 서비스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국제회의시설”이란 국제회의의 개최에 필요한 회의시설, 전시시설 및 이와 관련된 지원 시설·부대시설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국제회의도시”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를 말한다.
5. “국제회의 전담조직”이란 국제회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6.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이란 국제회의시설, 국제회의 전문인력, 전자국제회의체제, 국제회의 정보 등 국제회의의 유치·개최를 지원하고 촉진하는 시설, 인력, 체제, 정보 등을 말한다.
7. “국제회의복합지구”란 국제회의시설 및 국제회의집적시설이 집적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8. “국제회의집적시설”이란 국제회의복합지구 안에서 국제회의시설의 집적화 및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는 숙박시설, 판매시설, 공연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제15조의3에 따라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시산업”이란 전시시설을 건립·운영하거나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를 기획·개최·운영하고 이와 관련된 물품 및 장치를 제작·설치하거나 전시공간의 설계·디자인과 이와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거나 전시회와 관련된 용역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전시회”란 무역상담과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홍보를 위하여 개최하는 상설 또는 비상설의 견본상품박람회, 무역상담회, 박람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시회부대행사”란 전시회와 관련된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개최되는 설명회, 시연회, 국제회의 및 부대행사 등을 말한다.
4. “전시시설”이란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의 개최에 필요한 시설과 관련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시사업자”란 전시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전시시설사업자 : 전시시설을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사업자
 - 나. 전시주최사업자 :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를 기획·개최 및 운영하는 사업자
 - 다. 전시디자인설치사업자 : 전시회와 관련된 물품 및 장치를 제작·설치하거나 전시공간의 설계·디자인과 이와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자
 - 라. 전시서비스사업자 : 전시회와 관련된 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
6. “사이버전시회”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개최하는 전시회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청소년·아동·가족 복지를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2. 노인·장애인 복지를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3. 보건·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4. 교통, 주차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5. 문화·예술·영상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6. 노동자복지, 자활, 취업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7. 교육·교양·체육·공원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8.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17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수탁 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